

#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31,786,489	27,953,595
일반회계	874,159,272	26,224,778
특별회계	57,627,217	1,728,817
공기업특별회계	37,606,076	1,128,18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661,360	679,84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944,716	448,341
기타특별회계	20,021,141	600,63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474,450	164,23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96,034	89,88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006,996	60,210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3,065,760	91,97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526,764	45,803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585,000	17,550
도시개발특별회계	12,448	37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04,300	15,129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8,656	560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3,349,633	100,48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81,100	14,43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1,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